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 9. 4.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북지도시위원회(2024. 8.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의약과장 직무대리

가. 제출경위

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약과)

2) 제 출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나. 제출이유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표시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밖에 현행 추진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아동”의 정의에 있어서 ‘만 18세’ 표기를 ‘18세’로 개정
(안 제2조)
- 2) 별지/서식의 비용청구서인 [별지제1호], [별지제2호]를 삭제하고
조문별 구체적 조항으로 명시(안 제7조 및 안 제9조)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가) 「구강보건법」
 - 나) 「행정기본법」 및 「민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3) 기타
 - 가) 입법예고 : 2024. 7. 11 ~ 2024. 7. 31. (의견 없음)
 - 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 중인 ‘만 나이 통일법’¹⁾에 따라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 ‘의료지원비 신청’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현행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라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의료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명시적으로 기재함.

1) 「행정기본법」 및 「민법」

나. 주요 개정 조문

- 안 제2조제3호 “아동”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각 목의 적용되는 “만 18세”에서 “만”을 삭제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18세”로 규정함.
- 안 제7조 및 안 제9조의 의료지원비 신청을 위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삭제하고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들을 각 호로 신설하여 규정함.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시설명, 연락처,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종합의견

-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판례였으나,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등의 사용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가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의 혼선이 발생 되어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법령이 개정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사항을 반영하여 나이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만 나이’ 표시의 불필요한 단어인 ‘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없음. 다만, 개정 시기의 시의성이 다소 떨어져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된 사례가 없었는지의 확인

이 필요하며,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여 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음.

- 아울러 별지/서식은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부터 보건교육, 예방관리 등의 비용신청을 위한 학생 치과주치의 전용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활용됨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필요한 항목은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 계 법 령]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